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2011. 12

이세진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총괄 | 박용주 (사업평가국장)

기획·조정 | 천우정 (행정사업평가팀장)

집필 | 이세진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지원 | 황수지 (행정사업평가팀)

문의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02-788-4749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이 세 진

2011.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2011 年 1 月 1 日至 2011 年 12 月 31 日止，共发生 141 笔 392 笔，

[illegible]

0 0 00 0 0 0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0 0 00 0 0 · 0 0 0 00 0 0 0 00 0 0 00 0 0 0 0 0 0
 00 0 00**2010** 00 0 0 0 0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3** 0 0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0**16** 0 00 0 0 0 0
11 0 0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0 00 0 0 0 00 0 00 0 00 0 0 0 0 0 0 .

2011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07‰，死亡率为 7.53‰，自然增长率为 4.54‰。2012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1.59‰，死亡率为 7.40‰，自然增长率为 4.19‰。2013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1.59‰，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4.20‰。2014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3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4.98‰。2015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0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4.68‰。2016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5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5.18‰。2017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5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5.18‰。2018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5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5.18‰。2019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5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5.18‰。2020 年，中国人口出生率为 12.57‰，死亡率为 7.39‰，自然增长率为 5.18‰。

[illegible]

2011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요약

I. 서론

- [illegible]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1. 지방세 세입 현황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05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38.0% 증가한 3,800.0억 원으로, 이는 2011년 대비 41.1% 증가한 수치이다.

□ 의존재원 비중: 2005년 35.2% 2007년 38.0% 2011년 41.1%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의존재원 비중: 2005년 35.2% 2007년 38.0% 2011년 41.1%

□ 의존재원 비중: 2005년 35.2% 2007년 38.0% 2011년 41.1%

○ 2011년 지방세 세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4,411.1억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 2010 139 8,565 2011 141 393 (0.8%)

○ (1.5) (2.7)

, (1.9), , (1.5)

(1.9)

(1.9), (0.9)

나. 2011년도 지방재정 여건

□

○

□ 1) (1.7) (1.5)

○ 2010 , 2011

□ 30

○ 2010 , 2011

1) 일반재원은 사용에 있어서 조건이 붙지 않은 재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의미

- 在 2010 年，有 52.2% 的受訪者認為，在 2011 年，香港將維持現狀。
 - 在 2010 年，有 75.7% 的受訪者認為，在 2011 年，香港將維持現狀。

Ⅲ. 지방세제 평가

1. 총괄평가

가. 재원의 배분

- [illegible]

나. 재정적 독립성

□ 2003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5.8%로, 2008년 85.8%로 유지되어 있음.

○ 2003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5.8%로, 2008년 85.8%로 유지되어 있음.

○ 2003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5.8%로, 2008년 85.8%로 유지되어 있음.

□ 2006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7.2%로, 2011년 91.7%로 증가하여 있음.

○ 2006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7.2%로, 2011년 91.7%로 증가하여 있음.

○ 2006~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7.2%로, 2011년 91.7%로 증가하여 있음.

○ 2006~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7.2%로, 2011년 91.7%로 증가하여 있음.

○ 2006~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평균 87.2%로, 2011년 91.7%로 증가하여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및 세목별 비중

□ 1990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평균 70%로, 2000년 70%로 유지되어 있음.

○ 1990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평균 70%로, 2000년 70%로 유지되어 있음.

□ 2000~2009년 평균 22.0%, 19.5%, 17.3%로 나타났다. 특히, 2000~2009년 평균 36.7%, 32.3%, 22.2%로 나타났다.

- 2000~2009년 평균 22.0%, 19.5%, 17.3%로 나타났다. 특히, 2000~2009년 평균 36.7%, 32.3%, 22.2%로 나타났다.

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 OECD 평균 21%에 비해, 2007년 18.6%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1%에 비해, 2007년 18.6%로 나타났다.

- OECD 평균 21%에 비해, 2007년 18.6%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1%에 비해, 2007년 18.6%로 나타났다.

2. 세목별 평가

가. 취득세

□ 첫째, 2000~2009년 평균 22.0%, 19.5%, 17.3%로 나타났다. 특히, 2000~2009년 평균 36.7%, 32.3%, 22.2%로 나타났다.

- 2006년 21%에 비해, 2011년 18.6%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1%에 비해, 2011년 18.6%로 나타났다.

다. 지방소비세

-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비세는 100%로 인상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로 인상된다.
- 지방소비세는 100%로 인상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로 인상된다.
- 지방소비세는 100%로 인상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로 인상된다.
- 지방소비세는 100%로 인상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로 인상된다.

라. 주행분 자동차세

- 2018년 1월 1일부터 주행분 자동차세는 100%로 인상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0%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로 인상된다.

○ 3월 6,976억 원 생, 3월 1,465억 원 생, 담 1월 284억 원 생

☐ ○ ○ ○ ○ ○ ○ . ○ ○ ○ ○ ○ ○ ○ ○ ○ , 2005 ○ ○ 터 2009 ○ ○ ○ ○ ○ ○ ○
○ ○ ○ ○ 엑스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5.9%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민간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9.8%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하였다.

○ 2010년 10월 말 현재, 3.6조 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효 ○ ○ ○ 옥○ ○ ○ ○ ○ ○ ○ ○
○ ○ ○ ○ ○ ○ ○ 림 ○ ○ ○ ○ ○ ○ ○ ○ ○ ○ ○ ○ ○ ○ ○ ○ 판 ○ .

차 례

요 약 / v

I. 서 론 / 1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 3

1. 지방세 세입 현황	3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8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8
나. 2011년도 지방재정 여건	10
3. 지방세제 변천의 개관	13
가. 지방세법 제정(1949년)	13
나.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 지방세법 전문 개정(1960년대)	13
다. 지방재원의 충실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1970년대)	14
라. 행정구역의 개편 및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 강화(1980년대)	15
마. 지방자치제도 실시 및 재정분권화 노력(1990년대)	15
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분권 추진(2000년대)	17
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2009년)	17
아.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단행(2010년)	18

III. 지방세제 평가 / 20

1. 총괄평가	20
가. 재원의 배분	20
나. 재정적 독립성	22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및 세목별 비중	25
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26
2. 세목별 평가	27
가. 취득세	27
나. 재산세	33
다. 지방소비세	41
라. 주행분 자동차세(舊 주행세)	49
마. 지방세 비과세·감면	53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3

[참고자료 1] 경기도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 66

[참고자료 2] 서울시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 67

참고문헌 / 68

표 차례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3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6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7
[표 4]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8
[표 5]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9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005~2011년	10
[표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11
[표 8]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12
[표 9]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16
[표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국립중앙도서관)	18
[표 11]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19
[표 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3
[표 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4
[표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5
[표 15]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8
[표 16]	2004~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29
[표 17]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30
[표 1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2011. 1. 1. ~ 2012. 12. 31.)	32
[표 1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36
[표 20]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39
[표 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	43
[표 22]	OECD 국가별 GDP	46

[표 23]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51
[표 24]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54
[표 25]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55
[표 26]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56
[표 27]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2005~2009	57
[표 28]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2005~2009	58
[표 29]	고령화 지수,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지수: 2005~2009	62

그림 차례

[그림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20
[그림 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21
[그림 3]	OECD 국가별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2007년)	27
[그림 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49
[그림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50

I. 서론

- [illegible]

- 2000년 1월 1일 현재 전국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군·구 중에서, 2010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6개, 10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1개이다. 이는 2000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1개, 10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6개이다.
- 2011년 1월 1일 현재 전국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군·구 중에서 (2011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35.3%) 인구가 10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6개이다.
 - 2011년 1월 1일 현재 전국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군·구 중에서 1949년 1월 1일 현재 인구가 10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6개이다.
 - 30만 명 이하인 시·군·구, 10만 명,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인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6개이다.
- 40만 명 이하인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구는 16개이다.

II. 지방재정 현황 및 지방세제 변천

1. 지방세 세입 현황

- 2011년 지방세 수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141.0조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1년 지방세 수입은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141.0조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05년 지방세 수입은 35.2조 원으로, 2007년 38.0조 원, 2011년 41.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의존재원 비중 현황

(단위: 조 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체수입	57.1	60.7	65.9	73.7	80.8	79.4	79.3
의존수입(A)	32.5	37.4	42.6	47.8	53	55.3	58.0
지방채	2.8	3.3	3.5	3.5	3.7	5.2	3.7
합계(B)	92.4	101.4	112	125	137.5	139.9	141.0
의존재원 비중(A/B)	35.2	36.9	38.0	38.2	38.5	39.5	41.1

단위: 조 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조사보고서」, 2012년.

- 2011년 지방세 수입: 2010년 대비 41.1% 증가한 141.0조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 2010년 지방세 수입: 2009년 대비 38.5% 증가한 139.9조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38.5% 증가한 수치이다.

- 다만, 2011년 10월 말 현재 지방채 발행잔액 0.3조 원, 지방채 상환잔액 2.8조 원으로 지방채 발행잔액이 상환잔액보다 2.5배 이상 높았으며, 지방채 2008년 10월 말 현재 발행잔액 0.3조 원보다 낮았다.

□ 지방채 발행잔액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잔액의 감소

- 지방채 발행잔액(지방채 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은 2005년 35.2% 증가한 2008년 38.2%, 2010년 39.5%로 마하(마하) 지방채 발행잔액이 증가하고, 2010년 40%로 육박하고 있다.
- 지방채 발행잔액의 증가량은, 즉, 지방채 발행잔액 2008년 42.3%, 2009년 42.1%, 2010년 39.0%로 2008년 4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 지방채 발행잔액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잔액의 감소

- 2010년 10월 말 현재 지방채 발행잔액 5%(2.6조 원)로 지방채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 지방채 발행잔액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잔액의 감소

- 지방채 발행잔액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잔액의 감소는, 지방채 발행잔액 6조 8,249억 원, 지방채 상환잔액 7조 3,701억 원, 지방채 발행잔액 8조 1,454억 원, 지방채 상환잔액 4조 8,173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 2011년 10월 말 현재 지방채 발행잔액, 2010년 10월 말 현재 지방채 발행잔액 12조 9,201억 원, 지방채 상환잔액 8조 4,342억 원, 지방채 발행잔액 151조 151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 지방채 발행잔액 2010년 2조 6,790억 원, 2011년 2조 7,249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잔액이 증가했다.

[표 2] 최근 10년간 지방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15,257	331,329	342,017	359,773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497,434
취득세	52,782	55,028	53,661	66,490	76,675	72,615	69,160	66,439	68,249	129,201
등록세	75,045	75,500	67,158	67,837	79,495	72,536	71,429	71,314	73,701	-
지방 소득세	-	-	-	-	-	-	-	-	81,454	84,342
재산세	8,175	9,034	10,178	25,874	31,090	37,551	44,113	44,233	48,173	80,151
자동차세	17,507	17,783	17,920	19,021	21,338	23,699	26,109	28,339	31,195	62,822
지방 교육세	39,565	40,093	40,837	38,407	43,381	45,139	48,644	47,944	48,710	47,434
담배 소비세	22,378	23,844	27,223	24,479	27,027	27,610	29,204	30,107	28,749	28,526
지방 소비세	-	-	-	-	-	-	-	-	26,790	27,249
등록 면허세	-	-	-	-	-	-	-	-	0	10,599
레저세	10,777	8,959	7,719	6,919	6,878	8,643	9,890	10,023	10,675	9,589
지역자원 시설세	-	-	-	-	-	-	-	-	-	7,254
주민세	38,975	45,582	49,139	55,003	62,148	74,115	81,630	75,519	2,234	2,973
주행세	10,634	12,658	17,503	22,925	27,095	32,702	30,812	32,871	31,691	-
도시 계획세	8,938	9,985	11,853	13,525	16,062	18,828	21,828	22,692	24,653	-
공동 시설세	3,749	4,109	4,648	4,464	5,163	5,433	5,885	5,912	6,496	-
지역 개발세	951	1,034	1,102	1,097	1,745	1,000	926	908	954	-
면허세	633	650	677	705	750	765	726	735	762	-
도축세	485	441	445	469	493	519	524	557	581	-
농업 소득세	27	36	41	-	-	-	-	-	-	-
종합 토지세	14,057	16,026	20,316	19	137	53	-1	9	-8	-
사업소세	4,731	5,247	5,672	6,207	6,774	7,311	7,995	8,080	-8	-
과년도 수입	5,848	5,320	5,925	6,332	6,686	6,724	5,923	5,996	6,547	7,294

단: 2002~2010년 백만원, 2011년 백만원

단: 백만원

2. 2011년 지방재정 현황

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 2010 139 8,565 2011 141 393 (0.8%)

○ (1.5) (2.7)

(1.9), , (1.5)

(1.9)

(1.9), (0.9)

[표 4]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당초예산(A)	비중	당초예산(B)	비중		
자체재원	846,055	60.5	830,779	58.9	-15,276	-1.8
지방세	478,785	34.2	497,434	35.3	18,649	3.9
세외수입	315,556	22.6	296,349	21.0	-19,207	-6.1
지방채	51,714	3.7	36,996	2.6	-14,718	-28.5
의존재원	552,510	39.5	579,613	41.1	27,103	4.9
지방교부세	255,505	18.3	274,085	19.4	18,580	7.3
국고보조금	297,005	21.2	305,528	21.7	8,523	2.9
합 계	1,398,565	100.0	1,410,392	100.0	11,827	0.8

단위: 백만원, 2011. 3.

- 공공서비스(1.9%, 7.3%),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기본경비)
-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기본경비) 20% (2009 17.6%, 2010 19.0%, 2011 20.2%)
 - 공공서비스(1.9%, 7.3%),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기본경비)
 - 공공서비스(1.9%, 7.3%),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행정운영+기본경비)

[표 5]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 기능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2010년		2011년		증감	증감률
	당초예산	비중	당초예산	비중		
일반공공행정	119,448	8.5	124,714	8.8	5,266	4.4
공공질서 및 안전	21,768	1.6	23,366	1.7	1,598	7.3
교육	81,385	5.8	90,143	6.4	8,758	10.8
문화 및 관광	77,951	5.6	69,872	5.0	-8,079	-10.4
환경보호	149,009	10.7	150,300	10.7	1,291	0.9
사회복지	265,342	19.0	284,645	20.2	19,303	7.3
보건	22,250	1.6	20,082	1.4	-2,168	-9.7
농림해양수산	97,233	7.0	97,944	6.9	711	0.7
산업중소기업	30,031	2.1	30,395	2.2	364	1.2
수송 및 교통	164,801	11.8	151,119	10.7	-13,682	-8.3
국토 및 지역개발	128,439	9.2	116,452	8.3	-11,987	-9.3
과학기술	4,375	0.3	3,293	0.2	-1,082	-24.7
예비비	22,139	1.6	23,421	1.7	1,282	5.8
기타 (행정운영+기본경비)	214,394	15.3	224,644	15.9	10,250	4.8
합 계	1,398,565	100.0	1,410,393	100.0	11,828	0.8

단위: 백만원, 2011. 3.

[표 8]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입 순계예산 규모

(단위: %)

		전국	광역				기초		
			특별시 (본청)	광역시 (본청)	도 (본청)	특별자치도 (본청)	시	군	자치구
재 정 자 립 도	평균	51.9	88.8	53.8	33.5	24.9	38	17.1	36.6
	최고 (단체)		88.8 서울	65.8 인천	60.1 경기	24.9 제주	69.4 용인	47.5 울주	82.8 서울강남
	최저 (단체)			42.0 광주	13.5 전남		9.6 남원	7.6 신안	14 부산영도
재 정 자 주 도	평균	76.7	89.7	70.3	46.5	63.4	68.7	62.7	56.2
	최고 (단체)		84.2 서울	73.6 울산	62.4 경기	63.4 제주	91.8 과천	74.4 홍천	84.8 서울강남
	최저 (단체)			65.4 광주	32.0 전남		55.7 김제	46.7 신안	33.0 부산북구

출처: 기획재정부, 2011. 3.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인증을 늘리는 것이다.

- 1964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군정비율조정사업은 읍·면·군정비율조정사업이다.
- 1965년 1월 1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군정비율조정사업은 읍·면·군정비율조정사업이다.
- 1966년 1월 1일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군정비율조정사업은 읍·면·군정비율조정사업이다.

□ 1966년 1월 1일부터 196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군정비율조정사업은 읍·면·군정비율조정사업이다.

- 독점형식사업은 1968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69년 1월 1일부터 197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독점형식사업은, 1969년 1월 1일부터 197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다. 지방재원의 충실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1970년대)

□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 197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한 사업이다.

[표 9] 1988년 시·구 도입 후 목변화 비교

과세 주체	이 전		이 후	
	특별(직할)시	도, 시·군·구	특별(직할)시	도, 시·군·구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기초 -자치구 -사군구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목적세] -사업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 : □ □ □ □ □ .

[illegible]

[표 10] 지방 법 분법(分法) 개요

舊 法(1개법)			현 행(3개법)	
지방 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	지방세법	
	제4장(목적세)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표 11] 2010년 지방 목 간소화

과세 주체	2010년		2011년 시행	
	특별(광역시)시	도, 시·군·구	특별(광역시)시	도, 시·군·구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기초 -자치구 -시·군·구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통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단위: 천 원

III. 지방세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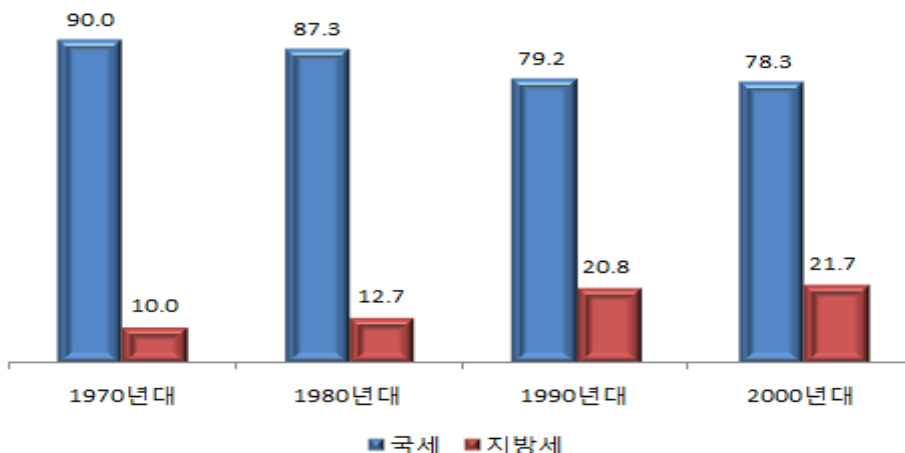
1. 총괄평가¹⁰⁾

가. 재원의 배분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1995년 기준 국세 비중 90.0%, 지방세 비중 10.0%.
- 1970~80년대 국세 비중 90.0%, 지방세 비중 10.0%.
 - 1995년 기준 국세 비중 87.3%, 지방세 비중 12.7%.
 - 1995년 기준 국세 비중 79.2%, 지방세 비중 20.8%.
- 1991년 기준 국세 비중 78.3%, 지방세 비중 21.7%.

[그림 1] 시대별 국세와 지방세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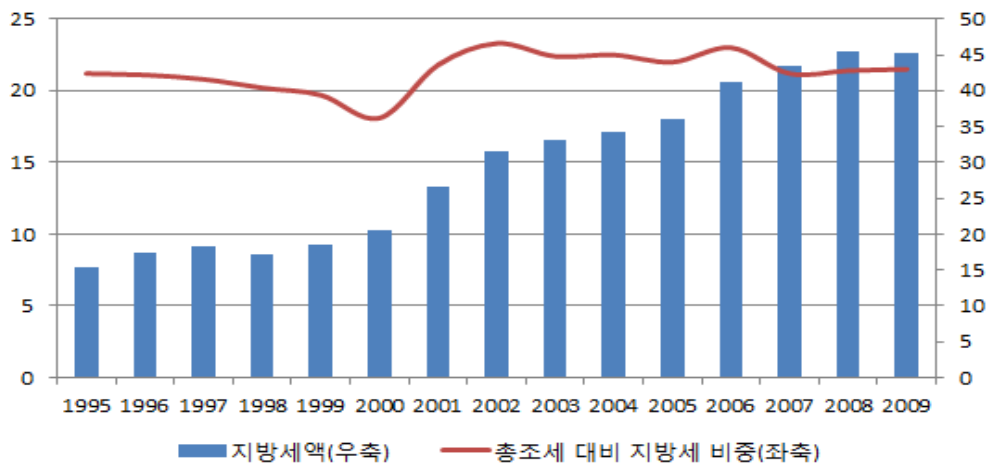
(단위: %)



단위: %

10) 국세·지방세의 비중, 국세 비중 90.0%, 지방세 비중 10.0%.

- 2009 年 1 月 1 日 起 施 行 78.5 : 21.5

$$(\text{ } : \% , \text{ })$$


□ □ : □ □ □ □ □ .

[illegible]

1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 2009 년도 예산 편성 시, 경상지출이 42 : 44 : 14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나. 재정적 독립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2003 년도 예산 편성 시, 경상지출이 42 : 44 : 14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2003~2010 년도 예산 편성 시, 경상지출이 42 : 44 : 14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frac{\text{지방세액}}{\text{지방세표면적}} \times 100$ (단, 2003~2010년 지방세액 및 지방세표면적은 지방세법상 지방세표면적에 따라 산정함)

[표 12] 지역별 재정자립도 동향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평균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서울특별시	95.9	95.5	96.1	94.3	90.5	88.3	92.0	85.8
부산광역시	74.9	75.6	73.4	70.2	62.9	60.5	58.3	57.6
대구광역시	76.4	73.2	73.9	70.7	63.9	59.5	54.7	56.3
인천광역시	74.6	75.9	70.0	69.2	69.8	71.0	74.2	70.4
광주광역시	63.0	59.8	60.6	57.5	54.2	52.6	48.3	47.5
대전광역시	73.6	74.4	75.0	72.8	72.1	66.4	59.3	56.3
울산광역시	71.6	69.6	69.9	65.7	68.4	69.9	67.7	67.2
경기도	78.0	78.8	76.2	75.2	74.9	76.3	75.9	72.8
강원도	26.7	28.9	27.5	26.7	28.3	28.2	28.0	27.1
충청북도	31.4	31.3	31.7	31.3	33.3	34.2	33.3	33.7
충청남도	29.8	30.5	32.7	35.3	36.9	37.8	36.6	36.6
전라북도	25.6	25.9	25.1	23.9	23.5	22.6	23.6	24.6
전라남도	21.0	21.1	19.9	20.2	20.1	21.4	19.4	20.6
경상북도	29.2	29.4	29.6	27.8	28.9	28.7	27.7	29.3
경상남도	37.2	38.3	37.5	38.8	39.1	39.4	39.4	42.9
제주도	37.4	34.7	39.3	33.8	26.4	26.3	25.2	26.1

주: 지방세액, 2011년 지방세액 (단위: 백만원)

주: 지방세표면적 = (지방세표면적 + 지방세표면적) / 지방세표면적 × 100, 단

□ 지방세표면적, 2006년 지방세표면적 (단위: 백만원)

- 지방세표면적, 2010년 87.2% (단위: 백만원) 2011년 지방세표면적 91.7% (단위: 백만원)

- 2006~2011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2006년 1,000억 원에서 2011년 1,700억 원으로 70% 증가하였다.
- 지방세 수입은 2006년 1,000억 원에서 2011년 1,700억 원으로 70% 증가하였다.
- 지방세 수입은 2006년 1,000억 원에서 2011년 1,700억 원으로 70% 증가하였다.

[표 13] 지역별 재정자주도 동향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평균	80.2	79.5	79.5	78.9	75.7	76.7
서울특별시	95.4	94.4	93.6	93.7	87.2	91.7
부산광역시	80.7	76.9	75.4	74.0	72.5	74.3
대구광역시	84.7	80.8	78.4	75.3	73.6	74.1
인천광역시	76.5	79.7	80.3	82.0	80.1	79.4
광주광역시	75.1	75.9	74.2	73.6	69.2	69.9
대전광역시	83.9	83.1	80.1	74.5	71.9	74.9
울산광역시	82.6	84.6	82.6	80.2	78.8	81.0
경기도	85.7	85.1	85.2	84.4	81.5	81.8
강원도	75.3	75.8	75.8	75.4	71.7	73.3
충청북도	76.4	76.9	76.1	74.6	70.9	71.5
충청남도	74.1	73.3	73.5	72.4	71.7	71.1
전라북도	70.1	69.8	70.1	71.7	68.9	67.8
전라남도	67.8	67.0	69.5	67.9	64.4	65.2
경상북도	76.2	75.9	75.1	74.6	73.0	73.6
경상남도	75.0	74.8	74.5	75.0	73.3	74.2
제주도	72.9	63.7	67.4	65.0	62.1	63.9

주: 2011년 12월 말 기준, 2011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비율: $\text{지방세 수입} / (\text{지방세 수입} + \text{국세 수입}) \times 100$, 단, %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 및 세목별 비중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90년대 초반에는 지방세입 비중이 10% 이하로 낮았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25%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은 25% 이상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0% 이하로 낮았다.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입 비중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10% 이상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0% 이하로 낮았다.

[표 14] 전체 지방세입 대비 지역별 지방세입 비중 비교

(단위: %)

	1991~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서울특별시	30.25	28.84	29.57	27.30
부산광역시	8.49	7.77	6.75	6.05
대구광역시	5.23	5.00	4.26	3.80
인천광역시	4.94	4.98	4.78	4.99
광주광역시	2.42	2.46	2.18	2.09
대전광역시	3.02	2.71	2.64	2.42
울산광역시	-	2.35	2.19	2.37
경기도	17.75	20.67	24.35	25.87
강원도	2.62	2.65	2.37	2.45
충청북도	2.45	2.49	2.26	2.43
충청남도	2.85	3.15	3.26	3.86
전라북도	2.91	2.85	2.37	2.35
전라남도	2.86	2.79	2.52	2.66
경상북도	4.99	4.72	4.13	4.34
경상남도	8.12	6.40	5.20	6.01
제주도	1.12	1.10	1.18	1.02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현황조사

□ 2000~2009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 2000~2009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2000년 22.0%, 2001년 19.5%, 2002년 17.3%, 2003년 18.5%, 2004년 36.7%, 2005년 32.3%, 2006년 22.2%, 2007년 28.5%, 2008년 16.8%, 2009년 25.3%
- 2000~2009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2000년 22.0%, 2001년 19.5%, 2002년 17.3%, 2003년 18.5%, 2004년 36.7%, 2005년 32.3%, 2006년 22.2%, 2007년 28.5%, 2008년 16.8%, 2009년 25.3%
- 2000~2009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2000년 22.0%, 2001년 19.5%, 2002년 17.3%, 2003년 18.5%, 2004년 36.7%, 2005년 32.3%, 2006년 22.2%, 2007년 28.5%, 2008년 16.8%, 2009년 25.3%

라. 국제 대비 지방세 비중

□ 2007년 지방세 수입 비중 OECD 평균 대비 추이

- 2007년 지방세 수입 비중 OECD 평균 대비 추이, 2007년 21%, OECD 평균 18.6%, 2008년 21%
- 2007년 지방세 수입 비중 OECD 평균 대비 추이, 2007년 21%, OECD 평균 18.6%, 2008년 21%

(□ □ : %)



가.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말 ○ .(○ ○ ○ ○ ○ ○ 6 ○ ○ 1 호)

-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2.5%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2.5%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2.5%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2.5%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표 17] 2006년의 거래세율 변동

< 현 행 >	< 완 화 >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2.5%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9억 원의 예산이 2%→1%, 9억 초·외 예산이 4%→2%로 감소
-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문제점 및 평가

- 첫째,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정건조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재정수입이 2010년 대비 1.2% 감소하고, 2012년 재정수입이 2011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8] 주택유상거래 취득 감면 현황(2011. 1. 1. ~ 2012. 12. 31.)

$$(\quad \quad : \%)$$

구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2011.1.1~ 2011.3.21	2011.3.22~ 2011.12.31	2012.1.1~ 2012.12.31
9억원이하 1주택자	4	2 (50%감면)	1 (75%감면)	2 (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4 (감면없음)	2 (50%감면)	4 (감면없음)

□ □ : □ □ □ □ □ , 2011. 10.

☐ 둘, 래
 ,
 협
 책 없
 많
 ,
 건 영
 완책
 야 .

○ 말 ○ ○
○ ○ ○ ○ ○ 택 ○ ○ 래 ○ ○ ○ ○ ○ ○ ○ ○ ○ ○ 50% ○ ○ ○ ○ ○ ○ ○ ○ ○ ○ 3.22
○ 택 ○ 래 활 ○ ○ ○ 책 ○ ○ ○ ○ ○ ○ ○ .

- 택: 100 40 터 100 80

○ 2019년 1월 5,420억 원, 2020년 1월 4,704억 원, 2021년 3월 8,881억 원.

○ 물은 종이를 만들 때 물을 많이 사용하면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 횡(專橫)
을, 물을 변 없음을 나타내며 좌
영을 나타낸다.

- [illegible]

[표 19] 현행 지방 법상의 탄력 율 제도

세목			세율조정
취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등록 면허	등록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의 율은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면허분		기본 율
레저			기본 율
담배소비			율의 3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음
지방소비			기본 율
주민	균 등 분	개인 (사업소없음)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액
		개인 (사업소있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법인	
	재산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율을 표준 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지방 소득	소득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율을 표준 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종업원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율을 표준 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재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 의 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 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가감한 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함)
자동차	소유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의 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율의 50/10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 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율의 3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표 20] 2006년 당시 서울특별시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현황

150%초과	100%초과	80%초과	50%초과	50%미만
강남구(196.6%)	중 구(140.6%) 서초구(126.5%)	송파구(93.9%) 종로구(88.4%) 영등포(81.1%)	양천구(57.2%) 용산구(53.3%) 강동구(52.9%)	강서구(49.9%) 도봉구(34.2%) 마포구(48.8%) 서대문(32.2%) 구로구(44.3%) 강북구(31.4%) 성북구(42.2%) 노원구(31.3%) 동작구(41.0%) 금천구(30.7%) 광진구(40.5%) 은평구(30.3%) 성동구(40.1%) 중랑구(26.3%) 동대문(37.4%) (16개 구) 관악구(34.5%)

[자치구간 재정격차 현황('06 세입예산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강남 : 종량 (7.5 : 1)

재산세 세수 - 강남 : 금천 (124 : 1)

↔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수준으로
2008년 25% 수준으로
(2009년 9월 10일)¹⁷⁾

17) 2009년(2008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44%)는 100% 이상, 10개 구(40%)는 80% 이상, 4개 구(16%)는 50% 이상, 1개 구(4%)는 30% 이상, 1개 구(4%)는 20% 이상, 1개 구(4%)는 10% 이상, 1개 구(4%)는 5% 이상, 1개 구(4%)는 0% 이하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08년 11월 30일 기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44%)는 100% 이상, 10개 구(40%)는 80% 이상, 4개 구(16%)는 50% 이상, 1개 구(4%)는 30% 이상, 1개 구(4%)는 20% 이상, 1개 구(4%)는 10% 이상, 1개 구(4%)는 5% 이상, 1개 구(4%)는 0% 이하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 30일 기준)

-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이는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이는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이는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18)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이는 2007년 1,000억(172억 8,300)에서 2010년 2,470억 8,900(460억 8,100)으로 5.4배 증가함.

[표 21] 전년대비 시도별 지방소비액 및 배분비율

(단위: 백만원, %, %p)

	지방소비세액				배분비율		
	2010년	2011년	증감규모	증감율	2010년	2011년	차이
전국	26,790	27,861	1,071	4.0	-	-	-
수도권	8,778	9,117	339	3.9	32.8	32.7	-0.04
서울	4,268	4,373	105	2.5	15.9	15.7	-0.24
인천	793	835	42	5.3	3.0	3.0	0.04
경기	3,717	3,909	192	5.2	13.9	14.0	0.16
광역시	6,168	6,378	210	3.4	23.0	22.9	-0.13
부산	2,179	2,240	61	2.8	8.1	8.0	-0.09
대구	1,443	1,501	58	4.0	5.4	5.4	0.00
광주	865	895	30	3.5	3.2	3.2	-0.02
대전	958	991	33	3.4	3.6	3.6	-0.02
울산	723	751	28	3.9	2.7	2.7	0.00
도	11,842	12,365	523	4.4	44.2	44.4	0.18
강원	1,194	1,241	47	3.9	4.5	4.5	0.00
충북	1,155	1,205	50	4.3	4.3	4.3	0.01
충남	1,591	1,673	82	5.2	5.9	6.0	0.07
전북	1,348	1,414	66	4.9	5.0	5.1	0.04
전남	1,299	1,361	62	4.8	4.8	4.9	0.04
경북	2,052	2,126	74	3.6	7.7	7.6	-0.03
경남	2,737	2,861	124	4.5	10.2	10.3	0.05
제주	466	484	18	3.9	1.7	1.7	0.00

주: 1. 지방소비세액 중 2010년 1,071백만원, 2011년 1,071백만원의 증감은 2010년 1,071백만원, 2011년 1,071백만원의 증감에 따른다.
2. 배분비율: 지방소비세액 중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 지방소비세액 중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 지방소비세액 중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4.2%, 2011년 44.4%로 나타났다.

- [illegible]

- [illegible]

- 셋째, 지방세 수입의 과다 증감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평가

- 지방세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소비세 비중이 60.9%로 가장 높고, 재산세 비중이 34.4%로 다음으로 높고, 기타세 비중이 5.6%로 가장 낮다.

[표 22]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원구조 비교

지방세 세원	소득·소비	원 구조		재 산	기 타
		소 득	소 비		
OECD 평균	60.9 %	40.3	20.6	34.4	5.6
한 국	32.1 %	16.3	15.8	48.8	19.1

단위: 백만 원, 2011.

- 지방세 수입의 과다 증감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지방세 세원별 비중을 보면, 소득·소비세 비중이 60.9%로 가장 높고, 재산세 비중이 34.4%로 다음으로 높고, 기타세 비중이 5.6%로 가장 낮다.
- 지방세 수입의 과다 증감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III. 지방세제 평가 ◆ 47

- [illegible]

라. 주행분 자동차세(舊 주행세)

(1) 개요

- [illegible]

[그림 4] 주행분 자동차 의 율구조 및 리터당 주행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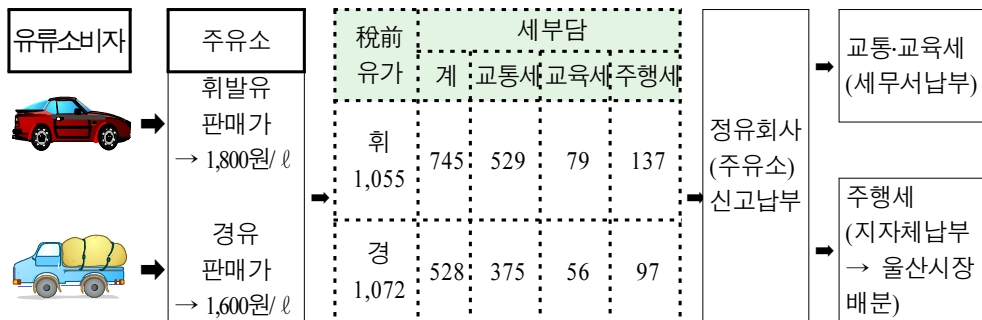
교통세 (정액세)	휘발유 529원/ℓ	×	주행세율(26%) 표준세율 36%의 ±30%	➡	휘발유 137.54원/ℓ
	경유 375원/ℓ				경유 97.5원/ℓ

□ □ : □ □ □ □ □ . 2011.

- ○○○○○○ ○○○○○○ ○○○○○○ ○○○○○○ 잡○○, 먼저○○·○○○○○○○○ 정○○
○○○○○○○○○○○○○○○○8,442억○○○○○○○○, ○○○○○○○운○○업○○○○○○
○○○○(운○○업○○○○○○○○○○○○) 명○○○○○○○○○○○○○○○○○○○○.(○○
○○○○○○○○133○○○○)

- [illegible]

[그림 5] 주행분 자동차 의 과 체계



□ □ : □ □ □ □ □ . 2011.

(2)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연혁

- 2001~2006 년 도 가 스 공 급 설 비 투 자 액 은 총 1.2 백 억 원 이나 되 는데 , 이 중 2001 년 7 월 1 일 터 기 (버 . 도 . 시) · LPG (택) 등 을 포함 한 것 은 2000. 8. 29. 제 정 된 가 스 공 급 법 제 20 조 제 2 항 에 의거 하여 2000. 9. 7. 국 가 협 력 기 금 으 로 전 이 하 였 습 니 다 .

[illegible]

[표 23] 정부의 에너지 세 개편 계획

구 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휘발유 : 경유 : LPG 가격비	100 : 75 : 60	100 : 85 : 50
개편시기	2001.7.1.부터 2004.7.1.까지	2005.7.1.부터 2007.7.1.까지

단위: 원/리터, 2011.

□ 2007. 3. 9.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여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를 100:75:60으로 조정하고, 2005.7.1.부터 2007.7.1.까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는 각각 100원, 75원, 6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2001.7.1.부터 2004.7.1.까지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 시점의 가격비(100:75:60)와 동일하다.

- 2007. 3. 9.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여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고, 2005.7.1.부터 2007.7.1.까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3) 문제점 및 평가

□ 지방세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세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지방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앞선 지방세 개편안은 지방세 세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주행 분 자동차세(舊, 주행세)를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10년 지방세 수입은 1,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4% 증가한 2,932,249억 원

- naboo**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2010년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9,832억 원으로 2009년 10,270억 원보다 4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22.3%로 2009년 25.0%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세 수입 총액 중 비과세·감면액은 2010년 1,396억 원으로 2009년 1,621억 원보다 2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과세·감면 비중은 14.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24] 지방세, 국세 비과세·감면 현황 총괄

(단위: 천 원, %, %p)

		2009 결산(A)	2010 추계(B)	증감(B-A)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감면총액	150,270	139,832	-10,438
	비과세	59,715	57,064	-2,651
	감면	90,555	82,768	-7,787
	지방세 수입총액(B)	451,678	487,907	36,229
	비과세·감면율(A/A+B)	25.0	22.3	-2.7
	GDP 대비 비과세·감면비중	1.4		
국세	국세 감면총액(C)	310,621	301,396	-9,225
	국세 수입총액(D)	1,645,407	1,750,125	104,718
	국세 감면율(C/C+D)	15.9	14.7	-1.2
	GDP 대비 국세·감면 비중	2.9		

출처: 기획재정부, 「2009년 지방세·국세 수입·지출 추계」(2009. 12), 「2010년 지방세·국세 수입·지출 추계」(2010. 12), 「2011년 지방세·국세 수입·지출 추계」(2011. 10), 「ECOS(www.ecos.bok.or.kr)」(2011. 5)

□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 「부동산」 제26조 9항에 따라 2009년 말 종료일 기준 7,325억 원, 2010년 말 종료일 기준 2,670억 원
- 2009년 말 종료일 기준 70% 2009년 말 종료일 기준 3,545억 원

[표 25] 전년대비 감소액이 큰 지방비과 감면 항목 현황

(단위: 백만원)

	2009결산(A)	2010 추계(B)	증감(B-A)	감소사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3,911,682	3,179,216	-732,466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감면종료(2009년 말)
노후자동차교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357,154	2,612	-354,542	감면종료(2009년 말)
담배수출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270,967	1,003,984	-266,983	면세담배 반출기준 강화
합 계	5,539,803	4,185,812	-1,353,991	

출처: 국토교통부, 「2010년 지방비과 감면 항목 현황」(2011. 5)

□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17년 27)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4,350억 원

26) 「부동산」 제27조 2

27)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 2010년 3월 6,976억 원의 생애, 2010년 3월 1,465억 원의 생애, 2010년 1월 284억 원의 생애
- 2010년 3월 39.4%, 2010년 3월 36.8%, 2010년 3월 34.0%, 2010년 3월 27.4%, 2010년 3월 26.1% 순으로

[표 26] 지방세·감면 현황

(단위: 원, %)

	2009 결산			2010 추계			비교증감	
	징수액	감면액 (A)	감면율	추계액	감면추계 (B)	감면율	B-A	증감률
보통세	360,137	139,545	27.9	395,990	130,472	24.8	-9,073	-6.5
취득세	66,439	47,264	41.6	68,135	44,350	39.4	-2,913	-6.2
등록세	71,314	42,524	37.4	71,841	36,976	34.0	-5,547	-13.0
면허세	735	35	4.6	672	51	7.0	15	43.5
레저세	10,023	157	1.5	9,703	75	0.8	-82	-52.3
주민세	75,519	92	0.1	16,820	495	2.9	403	436.2
지방소득세	0	0	-	65,521	1,505	2.2	1,505	-
재산세	44,233	29,913	40.3	54,153	31,465	36.8	1,552	5.2
자동차세	28,340	3,780	11.8	29,790	2,546	7.9	-1,235	-32.7
주행세	32,871	2,836	7.9	29,596	2,725	8.4	-111	-3.9
담배소비세	30,107	12,943	30.1	29,139	10,284	26.1	-2,659	-20.5
지방소비세	0	0	-	20,143	0	0.0	0	-
도축세	557	0	0.0	477	0	0.0	0	-
목적세	91,532	10,725	10.5	82,793	9,360	10.2	-1,365	-12.7
공동시설세	5,912	747	11.2	6,001	811	11.9	64	8.5
지역개발세	908	4	0.4	809	3	0.4	0	-7.5
지방교육세	47,944	1	0.0	46,677	3	0.0	1	110.2
도시계획세	22,692	8,025	26.1	22,532	8,484	27.4	459	5.7
사업소세	8,080	1,948	19.4	0	59	100.0	-1,888	-97.0
과년도수입	5,996	0	0.0	6,774	0	0.0	-	-
합 계	451,669	150,270	25.0	478,783	139,832	22.6	-10,438	-6.9

단: 원, 「2010년 지방세·감면 현황」(2011. 5), 「2010년 지방세·감면 현황」(2010. 10), 「2010년 지방세·감면 현황」(2010. 4)에 토의

- 2009 국세감면액 3,119억 원, 국세수입총액 1,646,382억 원으로 국세감면율 19.0%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에 비해 2009년은 19.0%로 나타났다.
-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로 나타났다.

[표 28]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 2005~2009년

(단위: 억 원, %)

	국세감면액(A)	국세수입총액(B)	국세감면율 A/(A+B)
2005	200,169	1,274,657	13.6
2006	213,380	1,380,443	13.4
2007	229,652	1,614,591	12.5
2008	287,827	1,673,060	14.7
2009	283,968	1,646,382	14.7
연평균 증가율	9.1	6.6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통계연보」(2010. 9)

(3) 문제점 및 평가

- 첫째,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로 나타났다.
- 2010년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2009년 19.0%에 비해 2010년 22.3%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 2010년 22.3%로 나타났다.
- 둘째,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은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 2010년 22.3%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 2008년 14.7%, 2009년 19.0%, 2010년 22.3%로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법률별 지방 감면 현황: 2005~2009년

(단위: 백만원, %)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례	소계
2005	17,150	14,051	5,227	16,494	35,772
2006	22,779	44,987	3,263	9,853	58,103
2007	48,982	50,766	3,334	9,930	64,030
2008	51,565	50,957	9,891	15,733	76,581
2009	59,715	59,897	13,849	16,809	90,555
연평균 증가율	36.6	43.7	27.6	0.5	26.1

단위: 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간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지방세 감면규정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함.³²⁾

32)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간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지방세 감면규정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함.³²⁾

[illegible]

[참고자료 1] 경기도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구 분	2005년 인하비율	적용기한	개정 동향
수원시	30%	계속적용	
성남시	50%	계속적용	
고양시	50%	계속적용	
부천시	50%	계속적용	
안양시	30%	계속적용	
안산시	-	-	2005.10.28 50% 인하결정, 2006년부터 적용
용인시	50%	계속적용	
의정부시	-	-	
남양주시	50%	계속적용	
평택시	-	-	검토중(보류)
광명시	30%	-	
시흥시	-	-	50%인하결정 2006. 3.15
군포시	30%	계속적용	
화성시	-	-	의원 발의 (2006.4.7)
파주시	25%	계속적용	
이천시	-	-	
구리시	50%	계속적용	
김포시	-	-	
포천시	-	-	
광주시	-	-	검토중 (30%~50%)
안성시	-	-	
하남시	50%	계속적용	
의왕시	40%	계속적용	
양주시	-	-	
오산시	-	-	
여주군	-	-	
양평군	-	-	
동두천시	-	-	
과천시	50%	계속적용	
가평군	-	-	
연천군	-	-	

단위: %

[참고자료 2] 서울시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동향

연번	구 명	방 침 결재일	입 법 예고일	구의회 의결일	적용비율	비고
1	종 로					미검토 상황
2	중 구				△40%	전년도 조례 유지
3	용 산				△20%	전년도 조례 유지
4	성 동				△10%	전년도 조례 유지
5	광 진				△10%	전년도 조례 유지
6	동대문	1.26	입법예고종료	4.12	△20%	집행부 발의
7	중 량				△20%	전년도 조례 유지
8	성 북				△20%	전년도 조례 유지
9	강 북				△20%	전년도 조례 유지
10	도 봉					미검토 상황
11	노 원	3. 13	입법예고종료		△20%	집행부 발의
12	은 평					미검토 상황
13	서대문					미검토 상황
14	마 포				△20%	전년도 조례 유지
15	양 천				△30%	전년도 조례 유지
16	강 서				△20%	전년도 조례 유지
17	구 로				△20%	전년도 조례 유지
18	금 천					검토중
19	영등포				△20%	전년도 조례 유지
20	동 작				△20%	전년도 조례 유지
21	관 악				△20%	전년도 조례 유지
22	서 초				△30%	전년도 조례 유지
23	강 남					△30%안 유력 4월중
24	송 파	3. 13	입법예고종료	4월 초순경	△30%	
25	강 동	2.27		3.31	△25%	집행부 △20% ⇒ △25%로 수정

□ □ : □ □ □ □ □ .

참고문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전동훈, “지방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9.

정중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Ⅱ」, 2011.

_____,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 2011.

_____,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_____,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

_____,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 지방재정분과
토론 자료집」, 2011.

기획재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6~2010.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구상욱	2004.11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최미희	2005. 2
3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 평가	신동진	2005. 4
4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 한·중·일 지식기반 기술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권용수·박추환	2005. 4
5	두뇌한국21 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이용준·이선주· 김혜영	2005. 4
6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항만개발의 발전 방안	남광현	2005. 5
7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철	2005. 5
8	IT839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박추환	2005. 5
9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배종학	2005. 8
10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구상욱	2005. 8
11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신동진	2005. 8
12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안태훈	2006. 5
13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원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은경	2006. 6
14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최미희·서세욱	2006. 6
15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박추환	2006. 7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병진	2006. 9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7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최미희	2007. 9
18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이인섭·금재덕	2007.12
19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안태훈	2008. 9
20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최미희·이은경· 김현중·서세욱	2008.10
21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현황 및 문제점	허가형·안태훈· 이은경·이화실	2008.10
22	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안태훈	2008.10
23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은경	2009.10
24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홍엽	2009.12
2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	제민·허가형	2010. 4
26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최미희·임도진	2010. 4
27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여차민	2010. 9
28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제민	2010.10
29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유지를 중심으로	남은정	2010.10
30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제민	2011. 8
31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정유훈·안태훈	2011. 9
3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채정	2011. 9
33	방위력 개선사업 재정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천우정·여차민	2011.10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발 간 일	2011년 12월 16일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발 행 인	주영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749
인 쇄 처	성지문화사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TEL 02·788·474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509-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1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